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62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윤상현·김선교·임이자

송석준 · 안철수 · 김 건

이주영 · 배준영 · 허종식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함.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해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변기간(不變期間)"을 "불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제한) ①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	해사법원
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기간은 <u>불변기간</u>	③불변기간
(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
	<u>고할 수 있다.</u>